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 명확화 (안 제2조제3호)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 - 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→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안 제2조제1호)
 -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(안 제13조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도록 조항 개정(안 제19조제2항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개의 → 개의(開議)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끝.